

대출 상품



Corporate Finance with KookminBank



운전자금대출

일반운전자금대출

- 자금용도: 원재료 구입,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- 대출형식
 - 1년 이내 만기일상환식
 - 3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식
- 대출금리: 고객의 신용도 및 시장대표금리를 기준으로 결정
- 특이사항: 주기별 금리 재산정 약정 가능
 - ⇒ 고객과의 사전 약속에 의해 일정기간 단위마다 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

상업어음할인

- 할인대상어음
 - 총액한도대출관련 상업어음: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행 (양도 배서 및 인수 포함)된 어음
 - 일반상업어음: 토지, 건물, 집기, 비품의 매각 등 영업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
- 할인가간: 할인대상 어음의 지급기일까지
- 적용금리(할인료율): 건별 할인가간에 대응하는 시장대표금리 및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

기타어음할인(유통어음할인)

- 할인대상자: 은행을 지급지로 하여 발행한 유통어음을 소지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(어음발행인 포함)
 - ⇒ 자기발행기업어음은 당행에서 정한 일정신용등급 이상업체에 한함
- 할인가간: 1년 이내에서 어음의 지급기일까지(자기발행어음의 경우에는 90일 이내)
- 적용금리: 할인가간에 대응하는 시장대표금리 및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 (한도거래의 경우에는 한도거래기간에 대응하는 시장대표금리를 기준으로 함)

지정어음할인

- 정의: 우량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소지한 소지한 업체가 당행에 할인의뢰할 경우 무보증으로 할인해 드리는 제도
- 대상어음: 당행에서 선정한 업체가 발행한 어음
- 적용금리(할인료율): 할인가간에 대응하는 시장대표금리 및 고객 (어음의발행인 및 의뢰인) 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업금융자점(팀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종합통장자동대출

- 대출대상자 : 당행의 기업종합통장 거래기업
- 대출형식 : 대출약정기간 중 대출약정금액이내에서 대출금의 인출 및 상환이 자유로운 대출
- 약정기간 : 1년이내
- 적용금리 : 고객의 신용도 및 시장대표금리를 기준으로 결정

일반당좌대출

- 정의 :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, 약속어음을 약정한 일정금액 까지 지급하는 대출
- 대출대상 : 거래상태가 양호하고 자산신용이 확실한 당좌예금 거래기업
- 약정기간 : 1년이내, 3년까지 기한연장 가능

일시당좌대출

- 대출대상
 - 일반당좌대출거래자의 일시적인 약정한도 초과시
 - 당좌대출약정이 없는 당좌예금거래자의 대출요청시
- 약정기간 : 90일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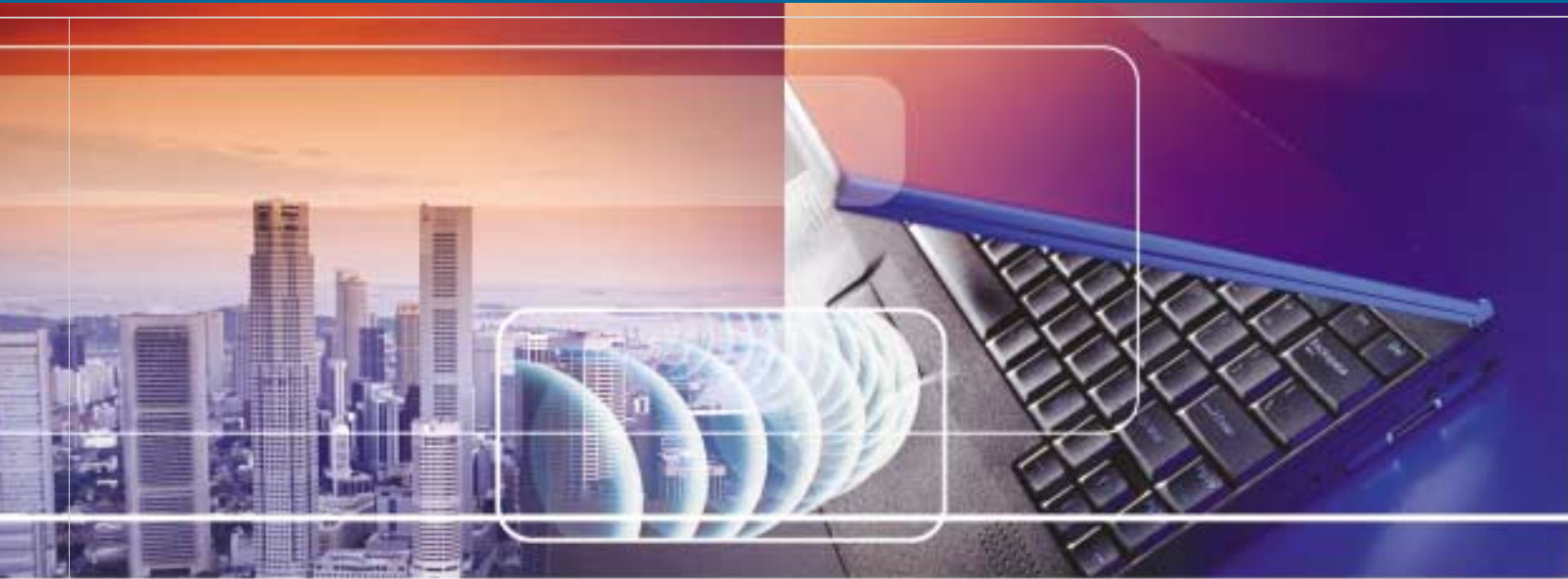
장기운전자금대출

- 대출대상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국민은행 중점육성기업
- 자금용도 : 창업비, 연구개발비, 공장 또는 사무실임차자금
- 대출형식
 - 3년이내 일시상환식
 - 5년이내 분할상환식(1년이내 거치기간 가능)
- 대출금리 : 고객의 신용도 및 시장대표금리를 기준으로 금리 결정

예부적금담보대출

- 대출대상 : 당행 예부적금을 담보로 하여 동 예부적금 납입액의 100%이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
- 대출기간 : 관련 예부적금의 만기일이내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업금융지점(팀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시설자금대출

일반시설자금대출

- 자금용도 : 시설(기계, 공장 등)의 확장, 개보수, 신설,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부대에 소요되는 자금
- 대출금액 : 총 소요자금의 80%(중소기업의 경우 90%)
- 대출형식
 - 1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식
 - ☞ 원금상환 : 거치기간 경과후 매 1개월,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원금균등분할상환
 - 3년 이내 일시상환식
- 대출금리 : 고객의 신용도 및 시장대표금리를 기준으로 금리 결정

단기시설자금대출

- 자금용도
 - 시설취득비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자금
 - 당행 시설자금의 재대출
 - 타행 시설자금의 대환여신
 - 경락자금대출 대출금액
- 대출형식 : 3년 이내 원금 일시상환식대출 증서대출
- 대출금리 : 고객의 신용도 및 시장대표금리를 기준으로 금리 결정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업금융지점(팀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자금대출

분양주택건설자금대출

- 대출대상자: 사업자등록증소지자로서 1단지 2호(세대)이상의 주택을 자기 소유의 대지에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기업
 - ☞ 차주나 연대보증회사가 당행 고객등급 BBB, 기업어음 신용등급 A 또는 회사채신용 등급 BBB등급 이상 업체인 경우에는 물적담보 취득을 생략하고 대출지원 가능
- 대출금액: 세대당 대출금액 x 평형별 대출대상 세대수
- 대출기간: 최장 3년 이내

건설업자운전자금대출

- 대출대상자: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자로서 1단지 20호(세대)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기업
 - ☞ 차주나 연대보증회사가 당행 고객등급 BBB, 기업어음 신용등급 A 또는 회사채신용 등급 BBB등급 이상 업체인 경우에는 물적담보 취득을 생략하고 대출지원 가능
- 대출기간: 최장 3년 이내에서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

대지구입자금대출

- 대출대상: 1단지 2호(세대)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등에 의거 주택건설용 대지구입여부가 확인되어야함
- 대출기간: 1년 이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내
- 대출금액: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이내 ☞ 소요자금을 매매계약서(관인)상 매매금액으로 함

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사업비대출

- 대출대상: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조합으로서 시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 - 당행 고객등급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
 - 기업어음 신용등급 A3급 또는 회사채 신용등급 BBB급 이상인 기업
- 대출기간: 최장 3년 이내에서 사업계획(승인)서상 사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소요자금
 - 조합과 시공사가 정한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의 100%
 -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업대지와 연속되어 있는 토지 매입비의 80%
 - 기타 주택사업비의 80%



외화대출

외화대출

- 자금용도
 - 운전자금 : 일반운전자금, 물품수입자금, 대외용역비 지급자금, 해외 직접투자자금, 외화차입금상환자금
 - 시설자금 : 일반시설자금, 시설재수입자금, 외화차입금상환자금 등
- 대출기간
 - 운전자금 : 3년이내(원금일시상환식은 1년이내)
 - 시설자금 : 10년이내
- 대출금리 : 기간별(1,3,6개월) LIBOR + 가산금리(spread)
- 대출비율 : 총 소요자금의 80%이내(중소기업의 경우 90%)
- 상환방법 : 3,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(원금일시상환식의 경우 매월이자 납입)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업금융지점(팀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대출

사모사채인수

- **인수대상**: 자산신용상태가 양호한 회사가 발행하고 다음 조건을 구비한 경우
 - 원금상환방법: 만기일시상환 또는 3월 단위 분할상환
 - 이자지급방법
 - 일시상환식: 매 1월단위 후지급
 - 분할상환식: 3월 단위 후지급
- **발행한도**
 - 최종 대차대조표상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이내
 -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이내
- **인수방법**: 사채의 권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, 발행가액 총액을 사채발행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인수

원화지급보증

- **보증대상**: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산 및 신용이 확실한 거래처
- **보증종류**
 - 용자담보지급보증
 - 상업어음보증
 - 사채발행지급보증
 - 기타 거래보증 등
- **보증기간**: 1년이내

회사채지급보증

- **보증대상**: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발행되는 5년이내에 최종상환일이 도래하는 사채
- **사채보증한도**
 -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 (리스회사는 5배이내)
 - 보증기간: 당해 사채의 상환기간이내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업금융지점(팀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수탁신용보증

담보력이 미약한 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당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

- **대상기업**
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 - 제조업
 - 도·소매업
 - 건설업
 -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
 -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
- **보증한도**
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하
- **보증금액**
대출금액의 80% 해당액
- **자금용도**
운전자금에 한함
- **연대보증인 입보**
당해기업의 특수관계인

■ 자동 신용 보증

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용 보증기금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당행으로부터 신용 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 받아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

- **대상기업**
제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**보증한도**
같은 기업당 15억원 이하
- **보증금액**
대출금액의 70% 해당액
- **자금용도**
설비투자에 따른 소요자금 이내의 시설자금

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업금융지점(팀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지방자치단체 협약 중소기업자금 대출(협약대출)

당행과 융자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대상으로 추천한 우량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보전하는 금리만큼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제도

- **대출대상:**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대상자로 추천한 중소기업
- **자금용도:**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- **대출금액:** 각 지방자치단체 추천금액 범위내
- **대출금리:** 시장가격대응금리 —이차보전금리
* 이차보전금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이
- **대출취급 가능점:** 각 지방자치단체 소재 영업점
- **장 점:** 이차보전금리 만큼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함

■ 정책자금대출

생산성 향상, 기술개발촉진, 에너지 절약,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법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례 등에 의거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조성한 자금을 해당 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

- **대출대상자:** 자금대여기관에서 대출대상자로 선정·통보한자로서 당행 내규상 대출적격자
- **대출금리:** 차입기관이 정한 이율
- **정책자금대출의 종류**
 -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자금대출
 -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
 -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대출
 - 정보화촉진자금대출
 - 산업기반기금대출
 - 산업기술자금대출
 - 재활용산업육성자금대출
 -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

■ 소상공인지원 은행자금대출

- **대출대상자:** 각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
- **대출금액:** 동일인에 대한 여신최고한도 범위내에서 업체당 50백만원이내
- **대출기간 및 형식:** 4년(거치기간 1년 포함)이내의 증서대출
- **기 타:**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함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업금융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